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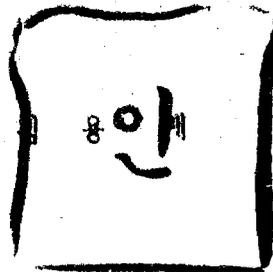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88년 5 월 7 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조(목적)중 "산하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 조(징계위원회 운영)중 "회무를 통비"를 "회의를 운영"으로 한다

제10 조(징계위원회 의결)제3항중 "별지3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의견을 해당란에 표시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후 결정하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제3항의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 조(재심청구)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재심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4)위원장은 재무국장, 부위원장은 새마을지도과장, 위원은 세정과장, 의약과장, 청소과장, 민방위과장이 된다"

"(5)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찬탈로부터 시행한다

